

# 외국인학생관리규정

제 정 2000. 3.

개 정 2017. 2.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에 유학하고자 하는 외국인 학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정의)** 규정에서 외국인학생이라 함은 본 대학과 교류협정이나 학생교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외국대학이 파견한 학생이나 소속 대학장의 추천을 얻어 본 대학 학사과정의 교과목수강을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.

**제3조 (교환목적)** 해외대학과의 학문적 교류를 증진하고 외국인학생들에게 한국 유학의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본 대학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**제4조 (자격)** 본 대학에 유학하고자 하는 외국인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본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
2. 소속 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

**제5조 (입학허가)** ①본 대학에 수학하고자 하는 외국인학생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입학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

②총장은 학부교수회의 의견과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허가 여부를 결정한다.

**제6조 (유학기간 및 신분)** ①외국인학생의 유학기간은 입학 허가시 정한 기간으로 한다.

②외국인학생은 본 대학의 재학생에 동등한 권리와 자격을 가진다.

**제7조 (장학혜택)** ①외국인에게는 본 대학과 소속대학간의 협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장학혜택을 줄 수 있다.

1. 기숙사는 무료(식비 포함)로 제공한다.
2. 의료는 본 대학의 보건진료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본 대학과 협정병원을 2차 의료기관으로 이용할 수 있다.
3. 장학금은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며 다만, 학기 후 기본성적(3.00이하) 미달시 미지급한다.
4. 봉사 또는 교육보조 등 근로장학생 형식으로 월 일정액을 생활비로 지급하며 금액은 교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②제1항 각 호의 지원 여부 또는 이외의 장학혜택 추가 여부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**제8조 (준수사항)** ①외국인학생은 본 대학에 수학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본 대학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.
2. 외국인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목적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.
3. 외국인학생은 소정의 유학기간이 끝나면 즉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.
4. 국내 체류기간 및 출입국상에 일어나는 개인신상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.

②외국인학생이 본 대학에서 수학하는 동안 본 대학의 학칙을 위반했거나, 소속학부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기 귀국시키고 파견대학에 통보한다.

**제9조 (보험가입)** ①모든 유학생과 교환학생은 기타 질병 및 상해 사고를 대비하여 질병 및 상해보장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.(개정2017.02.17.)

②유학생과 교환학생은 고지된 보험금을 납부함으로써 건강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, 보험에 가입 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, 수강신청 학점 수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가 등을 제한할 수 있다.(개정2017.02.17.)

**제10조 (보험금청구)** ①상해 및 의료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②모든 외국인 학생은 교내에서의 각종 상해 사고 시 학교가 정한 상해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.

③사고발생시 유학생 단체보험 담당자에게 즉시 사실을 통보하고, 학생 상담 후 보험금 청구 대행 업무를 지원한다. (신설2017.02.17.)

**제11조 (기타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의 학칙 및 학사 내규에 따르며,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(신설2017.02.17.)

부 칙

**제1조 (시행령)**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**제1조 (시행령)**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